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박정현 · 임미애
김남희 · 김정호 · 박용갑
염태영 · 손명수 · 박홍배
문진석 · 복기왕 · 한민수
이광희 · 김기표 · 이춘석
이정문 · 박상혁 · 안태준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.

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,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,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

예외를 인정하되,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.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
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) ①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</u> ----- ----- --. 1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</u> 2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,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